

조사·검사 증명서

1. 조사 및 검사자 인적사항

소 속	직 급	성 명	비 고

2. 출입일시 : 년 월 일 시 ~ 월 일 시

3. 출입지역 및 장소 :

4. 출입목적 :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제1항제 호

위 사람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

조사 또는 검사·질문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건설교통부장관 인

○○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인

○○ 시장·군수·구청장 인

유의사항

1. 중개사무소에 출입·조사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사·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신분증과 함께 내보여야 한다.
2. 위 사람의 조사·검사·질문에 불응할 경우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6월 이하의 업무정지, 거래정보사업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4g/m²(재활용품))